

구매조건

- 1. 승인:**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문 (“주문서”)을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계약이행을 시작하는 것으로써 승인할 수 있다. 구매자의 권한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주문서에 어떠한 변경, 수정, 또는 정정할 수 없다. 판매자의 견적서 또는 기타 청약서류에 제시된 조건과 다르거나 추가된 모든 조건에 대해서, 판매자가 명백하게 동의해야만 본 주문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 또는 소모품(“주문제품”)의 일부분을 전달하거나, 주문서에 기재된 서비스(“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개시한다면, 이는 판매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매자는 주문, 제안, 견적, 입찰 또는 기타서류에 대한 판매자의 승인 또는 확인서에, 만약 판매자가 그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이나 다른 조건삽입하고자 한다면, 구매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주문승인, 승인이라고 간주되는 서비스 이행개시 또는 제품 공급에 있어 상이한, 또는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판매 계약은 상이한 또는 추가적인 조건 삽입없이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의거한다.
- 2. 완전 합의:** 본 구매조건 및 첨부서류, 설명서, 지침, 요구사항, 주문서에 특별히 언급된 부속서류와 함께 본 주문서는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 완전한 합의를 나타내며, 모든 사전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우선효를 갖는다. 주문서에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본 구매조건 또는 이의 첨부서류와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또는 기본계약서간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주문서의 일정 조건이 법령, 규정, 조례, 행정명령 또는 법의 기타 규정에 의해 무효 또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개정 또는 삭제대상이 되나, 해당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효력을 갖는다.
- 3. 비독점:** 본 구매조건은 비독점 거래이다. 주문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한, 구매자는 그 어떠한 최고 구매조건이나 자격조건이 없으며, 구매자는 재량으로 제 3 자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 4. 배송:** 배송은 구매자가 요구한 양과 시간에 이루어진다. 배송시간 및 배송양은 모든 배송 또는 서비스이행의 핵심요소이다. 배송 또는 이행은 주문서 또는 서면으로 합의된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만약 구매자의 배송이 주문된 양이 아니고/ 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다른 권리 및 구제수단의 제한 없이, 특송을 알아보아 이를 위해 부과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부과하거나, 주문 전체 또는 일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구매자 주문에 기재된 배송일자를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특별요금이나, 기타 관계된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이다. 단, 배송지연 또는 비용발생이 전적으로 구매자의 과실이고 판매자가 해당 청구를 야기하는 과실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구매자를 대상으로 청구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매자의 서면승낙이 없는 한, 상품포장, 운송상자,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그 어떠한 비용도 구매자에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량을 초과하여 배송된 제품은 거부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비용으로 반환된다.
- 5. 소유권 및 위험이전시기:** 소유권 및 위험이전은 주문제품이 구매자가 요구한 장소에 배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매자에게 있다. 판매자는 모든 주문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증하며, 그러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담보, 청구, 저당설정등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 6. 검수:** 모든 주문 제품 또는 서비스는 배송 또는 이행 이후에 구매자의 최종검수 및 승인 대상이다. 팔레트 또는 박스로 된 상품의 배송확인만은 단지 배송확인의 증명 목적으로만 외부포장단위로 계산된다. 구매자는 배송승인 후라도 실제 배송량을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잔량 배송요청은 시의적절하게 요청해야 한다. 구매자는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불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결함 있는 원료 또는 기술을 포함하거나, 제품 사양 또는 샘플과 부합하지 않은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된 제품은 판매자의 위험부담, 즉, 판매자의 위험 및 비용부담(운송비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처분, 또는 반환될 수 있다. 구매자가 서면으로 명백히 요청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가격 또는 서면 요구 당시 유효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거절된 제품을 교체해서는 안된다.
- 7. 변경공지:** 판매자는 판매품(제품 중단을 포함)에 대한 변경을 인지할 때마다 즉시,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여기서 “변경”이라 함은 구성, 원재료, 제조지, 프로세스 또는 장비, 테스트 사양, 방법 또는 로트 승인기준, 유효기간, 포장 및/ 또는 라벨의 의도적인 대체 또는 수정을 의미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권한있는 대표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그러한 변경이 적용된 제품을 공급해선 안된다. 판매자가 그러한 변경공지를 하지 않는 행위는 본 주문서의 중요한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구매자가 그러한 변경을 알게 되는 즉시, 제품을 거절하거나, 이를 승인 또는 이미 제품을 소비했다면, 이를 재량으로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본 주문서나 법규상 허용되는 기타 다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고위험물질-NON-EEA 판매자: 판매자가 유럽경제지구(“EEA”) 이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유럽연합의 화학물질등록평가에 관한 법률(“REACH”)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품목(포장 포함)이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조항이 적용된다.

A.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공급한 완제품에 증량비로 100 PPM 초과 고위험우려물질 (REACH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포함될 수 있음을 구매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B. 판매자는 판매자가 관련 법규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어떠한 손실(배상청구액, 비용, 경비, 벌금, 위약벌, 및 변호사 비용포함)에 대해서도 구매자, 모회사, 계열사 및 각각의 임원, 이사, 및 직원을 방어, 배상 및 면책하기로 한다.

9. 구매자제품사용에 특화된 공급: 구매자 제품에 같이 포함되거나 제품 사용을 위해 특화된 제품이 공급되는 한, 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i) 모든 적용가능한 방안을 조사하고, 구매자가 검토를 요청한 범위 내에서 구매자가 제시한 적용가능한 모든 사양서를 읽고 검토함. (ii) 판매자는 공급대상이 위 여기 언급된 것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한, 언급된 방안과 사양서(검토했다면)에 구속됨.(iii) 판매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급은 모든 법규, 법령, 규정, 조례, 규칙, 및 기타 명령을 준수함. 그리고 (iv) 그러한 공급품의 보증기간은 16 조에 기재된 보증기간 또는 구매자 제품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증기간 중 긴것으로 한다.

10.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A. 판매자는 구매자가 사용할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매뉴얼, 기술자료 및 기타 문서(“문서”)에 대해 구매자에게 영속적(주문서에 기재된 특정기간이 없는한),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아래 기재된 조건에 따라 부여한다. 구매자는 (i)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 및 실행; (ii) 판매자의 저작권 및 소유권 표시를 매 복사물마다 기재하는 조건으로 기타 재난복구, 백업 및 저장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복사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자가 사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스템”)에 접근 및 사용권을 부여한다.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인 유저가 수의 제한없이(주문서에 특정 유저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외) 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그러한 직원이나 계약자의 주문서 위반에 책임을 부담하는 한, 그러한 사용자는 구매자의 직원, 계약자가 될 수 있다. 구매자는 (a)소프트웨어 또는 어떠한 시스템도 역조립 또는 분해할 수 없으며, 또는 역분석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b)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및 시스템에 있는 라벨이나 소유물 표시를 제거할 수 없다.

B. 판매자는 주문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비용부과없이, 판매자는 (i)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기능 또는 특징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ii)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보완, 개선, 수정, 미미한 향상, 오류정정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버전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정버전을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판매자는 또한 주문서에 기재된 서비스레벨을 포함하여 주문서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지정된 기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

11. 양해가능한 지연: 어떠한 당사자도 천재지변, 정부행위, 공공의 적, 전쟁, 방화, 홍수, 전염병, 폭동, 파업, 화물운항정지, 민사 또는 군대명령, 또는 어떠한 당사자도 잘못이나 과실 없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구매자는 15 일 사전서면통지로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그러한 취소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 지연통지: 판매자가 주문에 대한 적절한 이행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관련 모든 정보를 포함한 서면통지를 구매자에게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본 문장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에 본 조항을 삽입하기로 한다.

13. 구매자의 자산: 구매자가 요금부과가 되지 않고 일정 주문과 관련되어 원료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원료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14. 가격: 주문서에 기재되지 않는 한, 가격은 운송, 포장, 보험, 취급 및 기타 부과 요금뿐만 아니라, 국세, 운송세 또는 기타 다른 세금(“세금”)을 모두 포함하며, 판매자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세금, 관세, 및 부가금을 지불한다.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가격은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통화의 등락, 원재료 또는 가격구성요소, 인건비 또는 기타경비의 변경을 기초로 한 증가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가격인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5. 상계 및 공제:

A. 법에서 허용하는 상계 또는 공제에 대한 권리 이외에,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판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가 구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서 차감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변호사 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을 포함하여 판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가 구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에게 지불예정이거나 지불예정인 금액을 판매대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다. 구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가 합리적으로 채권회수에 위험을 인지하면, 구매자는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자 또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에게 지급예정인 것과 상응되는 금액을 지급보류하고 회수할 수 있다.

B. 판매자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구매자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분쟁 중이거나, 불확정 또는 청산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그러한 의무가 해결될 때까지 금액전부 또는 일정부분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판매자가 파산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 주문서가 다시 실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처분 또는 기타수단을 통해 구매자는 잠정적인 거부 및 기타 손해액에 대해 주문제품의 대금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C. 판매자 파산(아래 정의에 따름)의 경우, 판매자가 파산신청을 대금지불 만기예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하든 이와 상관없이 구매자는 판매자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판매자가 본 주문서에 따라 구매자를 면책할 의무가 있는 금액과 상계, 공제 및 지급 보류할 수 있다.

16. 보증:

A. 양사간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기간은 구매자가 처음사용한 날로부터 시작하며,(i) 18 개월 또는 (ii)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른 기간 중 늦은 날까지 계속된다.

B. 판매자의 관례적인 보증, 주문서상의 명시적 보증, 및 법에서 요구되는 보증 이외, 판매자는 명시적으로 주문서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i) 모든 사양서, 도안, 컨테이너 혹은 상표에 대한 설명서,구매자가 혹은 구매자에게 제공된 기술서 및 샘플 및 모든 업계 표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되고 이행되는 국가에서 유효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ii)디자인, 원료 및 기술상 결점이 없고, 새롭고 최고의 품질이다; (iii)상품성이 있고, 좋은 원료와 기술이며, 결함이 없으며, 안전하고, 판매자가 알고 있는 구매자의 특정 목적에 부합한다.; (iv) 적절하게 담겨져야 하며, 포장되고, 표시 및 라벨이 부착된다.; (v) 서비스의 경우, 모든 서비스는 유능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이행된다.; (vi) QS 9000, ISO 14001, TS 16949, PPAP, 및 APQP 와 같은 업계품질기준에 부합되게 제조된다.; (vii)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기타 공급품에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다음은 보증한다(a) 고장난 부품이 존재하지 않음.(b) 배송 또는 사용당시 바이러스가 없음.(c)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품질확인절차를 거침 (d) 구매자 사용을 방해하거나 막을만한 장치나 코드가 장치(시한폭탄등)되어 있지 않음. “바이러스”라 함은구매자가 사용하는 또는 구매자가 일반적인비즈니스 운영상 요구되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칩에 내장된 해롭고, 숨겨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증은 구매자의 검수, 테스트, 배송, 승인, 사용 및 지불이후에도 존속되며,구매자, 구매자의 승계인, 양도인, 고객 및 공급품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보증은 제한되거나 부인될 수 없다.

C. 판매자는 본 주문서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판매자 또는 그 하도급업자가 아동, 노예, 수감자 또는 강제 혹은 비자발적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지 않으며, 부패한 사업관행에 관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판매자는 그와 같은 준수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17. 구제책: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책은 누적되며, 법 혹은 형평성에 따라 부여된 기타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일정 위반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행위 위반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조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이 무효하고 해서 다른 조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주문제품의 공급 또는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금전 손해배상이 주문서의 실제, 예상되는, 위협되는 위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며,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기타 권리 및 구제책 이외에도, 구매자는 실제 손해액의 증명 없이, 그리고 요구되는 채권 혹은 기타 담보 없이 그러한 위반의 구제책으로, 특정이행 및 임시, 예비 및 영구적인 금지 혹은 기타 동등한 명령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8. 책임 및 면책: 판매자는 배송된 주문제품 또는 이행된 서비스에 대해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자 또는 그 직원, 대리인 혹은 해당 주문서와 관련있는 하도급업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을 포함한 재산손실 또는 상해, 기타 비슷한 성질의 것을 이유로 발생한 손실, 비용 또는 책임으로부터 구매자 및 그 임원, 이사, 모회사, 직원 및 계열회사를 방어, 배상, 면책해야 한다.

19. 구매자의 책임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기회비용 또는 우발적, 결과적, 특별,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전자의 제한 없이, 양사는 (a) 주문서의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해, 판매자의

손해액은 24 조(해지청구권)상에 기재된 손해액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b) 기타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손해액은 위반의 근거이거나, 청구를 야기시킨 당해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가 부과한 대금으로 제한한다.

20. 판매자의 재정 및 운용상황:

A. 판매자는 주문서의 날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대표하고 보증한다. (대표와 보증은 판매자의 각 주문의 승인날짜 및 배송시간에 반복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i) 판매자는 채무불능상태가 아니며, 만기에정인 모든 채무를 지불하고 있다; 모든 대출계약 및 기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ii)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재무정보를 모두 진실이고 정확하며, 판매자의 재무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iii) 판매자의 재무제표는 GAAP 에 따라 작성되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B. 구매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판매자는 감사받은 분기별 또는 연간재무제표의 복사본(판매자가 그러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을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판매자는 주문서 준수 및 판매자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매자의 장부 및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목적으로 모든 장부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판매자는 과산이 임박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서면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21. 판매자 파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혹은 이와 상응되는 사건(이하 “판매자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책임부담없이 주문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i) 판매자 파산; (ii) 주문서하의 판매자 의무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이행할 수 있는 판매자 재정능력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기에 판매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iii)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iv) 판매자를 대상으로 비자발적인 파산신청이 된 경우; (v) 판매자의 파산관재인 또는 신탁인의 임명; 또는 (vi) 판매자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실행. 판매자는 변호사 및 기타 전문인력 비용을 포함하여 판매자 파산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

2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구매자는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없이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즉시 해지할 권리가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 구매자는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i) 판매자가 판매자의 보증사항을 포함하여 주문서의 일정 조건을 이행거절, 위반 또는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ii) 판매자가 구매자가 명시한 대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못한 경우; (iii) 판매자가 주문서상의 판매자 의무를 이행기에 판매자가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주지 못한 경우; 또는 (iv) 판매자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행한 다른 주문서의 계약위반으로 해지한 경우(해당 주문서가 당해 주문서와 관련성은 상관없음). 어떤 이유에서든 구매자의 해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판매자의 손해액은 23 조에 따라 해지된 경우, 판매자에게 인정되는 손해액으로 제한된다.

23. 편의에 의한 해지: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는 구매자의 다른 권리수단 이외, 구매자는 선택적으로 주문서 전체 또는 일정부분을 언제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서면통지를 통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4. 해지청구권:

A. 22 조 및 23 조에 따라 해지통보를 받은 즉시,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한 바가 없는 한, 판매자는 (i) 주문서하의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 (ii)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매자에게 사용가능하고 판매가능한 완제품, 공정중 제품, 및 주문서 하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에 따라 판매자가 생산한 또는 구입한 원재료/부속품을 이전; (iii) 해지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위해, 주문서, 주문서 보완합의서, 또는 사인된 서면으로 구매자가 승인한 하도급자에 의해 제기된 분쟁해결; (iv) 구매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판매자 점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가 지정한 다른 업체가 주문서상의 주문제품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한다.

B. 23 조에 의해 구매자가 주문서를 해지한 경우, 구매자는 중복되지 않고, 판매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불한다; (i) 기존에 지불된 바 없고, 주문서의 요구사항을 부합하는 완전한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대금; (ii) A 에 의거하여 구매자에게 이전된 사용가능하고 상품성있는 공정중의 제품 및 원재료/부속품의 실제 비용; (iii) 주문서 또는 사인이 된 서면으로 구매자가 승인한 하도급자들과 분쟁 해결에 소요된 판매자의 합리적인 실제 비용, 그리고 (iv) 판매자가 A(iv) 및 A(v)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용된 실제 비용.

C. 22 조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지불요청의 자격이 없다.

D. 24 조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판매자의 하도급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이익손실, 미배부제 간접비, 청구비용 이자, 제품개발 및 엔지니어링 비용, 시설 및 기계배열비용 또는 임대, 미상각된 감가상각비, 부수적인 출구 비용 또는 일반적인 행정비용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장되는 손실금액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이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지로 인해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의무는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다.

E. 23 조의 해지발효일 이후 30 일 이내, 판매자는 주문서에 기재된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의무조항만을 나열한 근거자료와 함께 구매자에게 해지청구를 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해지청구상 요청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지불이전 또는 이후 판매자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25. 공급이전: 일정이유로 인해 주문서의 조기 종료 또는 만료되는 즉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주문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또한 판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다른 공급처로 이전하는 데 있어,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26. 지적재산권 보증: 주문이행과정에서 창출된 일정 아이디어, 발명, 개념, 디자인, 원형, 제품배열, 프로세스, 기술, 절차, 시스템, 플랜, 모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혹은 코드, 데이터, 사양, 도안, 작업공정도, 서류 혹은 기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주문제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의 단독 그리고 배타적 소유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구매자가 독점 혹은 기밀로 간주하는 그리고/ 혹은 동일영업비밀법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서 보호자격이 있는 모든 특허권, 특허응용, 특허가능한 사안, 저작권, 저작가능한 사안, 저작물, 파생물, 상표, 상품명, 상품외장, 영업비밀, 노하우 및 기타 다른 사안, 물질 또는 정보를 뜻한다. 판매자는 명백하게 모든 주문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27. 지적재산권 면책: 판매자는 주문제품의 제조, 사용 혹은 판매로 인해 제공된 주문제품 또는 그 제조방법이 미국 혹은 외국의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요청, 손해액으로부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 구매자, 그 계승자, 임명인, 고객 및 사용자("면책인")를 방어, 면책, 보호해야 한다. 실제 또는 침해주장이 제기되어 주문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제한될 경우, 판매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양사간 합의한 바와 같이, 해당 주문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침해가 되지 않는 다른 동일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해당제품을 침해하지 않게 수정하거나, 운송, 설치, 제거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구매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구매절차에 있어 구매자는 특허유효성에 대해 확인할 의무는 없다.

28. 평등고용기회 및 법규준수: 판매자는 본 주문서하에서, 주문제품의 하차, 저장, 취급,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서비스이행에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법규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구매자를 면책해야 한다.

29. 유해물질: 공급제품 제조에 있어 사용된 모든 구매된 물질은 제조국 및 판매국에 적용가능한 환경, 전자, 전자기기준 뿐만 아니라, 유효하게 적용되는 제한물질, 유해물질 및 위험물질에 대한 정부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문서가 화학물, 원재료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물 및/또는 제한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구매자 요청에 의해 판매자는 즉각적으로 구매자에게 다음정보를 제공한다. (i) 공급제품에 잠재적인 위험물질 요소의 모든 내역;(ii) 그러한 요소의 양; 그리고 (iii) 그러한 요소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정보. 공급제품의 선적이전에, 판매자는 (a)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b) 공급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한 사용과 위해정보; 그리고 (c) 운반업자, 구매자 및 구매자의 직원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제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의 취급, 운송, 처리, 사용 또는 폐기처분시, 신체상해 또는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취급주의사항과 함께 공급제품의 일부구성이나 요소를 이루는 유해물질의 충분한 서면경고 및 통보(적절한 라벨, 포장용기 및 포장포함). 판매자는 때때로 개정되는 ISO14001, TS16949 및 ELV 또는 그 하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0. 수출 통제: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습득한 국가 또는 미국법규를 위반하여,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구매자의 정보를 이용 혹은 추출된 제품, 정보를 수출 또는 재수출, 우회 또는 수출, 재수출유인, 배송해서는 안된다.

31. 현장 서비스: 만약 판매자가 주문이행 중에 구매자의 통제 하에 있거나 점유, 소유, 임대구역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경우, 판매자 및 하도급업자는 판매자의 의무를 커버하는 다음의 최소 금액의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주문서상의 이행행위를 모두 다루는 산업재해보험; 건당 최소 \$500,000 을 금액으로 하는 고용보험; 최소 5,000,000 을 금액으로 계약의무를 포함한 일반 책임보험; 그리고 최소 \$1,000,000 을 금액으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유효하고 적절하게 실행된 보험증서를 제공한다. 판매자는 이용가능한 안전수칙, 현장절차등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서류, 차량, 또는 컨테이너를 조사할 수 있다.

32. 기밀준수: 판매자는 주문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본 주문서 전후를 막론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그 직원, 대리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면, 구두, 전자적 수단 혹은 도안 또는 검사의 방법으로 공개한 구매자 또는 제 3 자의 사업, 서비스, 제품, 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기술데이터, 노하우를 포함하여 보상정보, 리서치, 제품, 서비스, 개발, 발명, 프로세스, 기술, 전략,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디자인, 유통, 엔지니어링, 마케팅, 재무, 상품화 또는 판매정보,

고객 개별 프로파일, 고객리스트, 혹은 총괄적인 고객데이터(“기밀정보”)를 망라하여 구매자의 사업, 서비스, 제품에 관련된 구매자 소유 혹은 공개하는 기밀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판매자는 본 주문서를 이행할 목적 이외의 그 어떠한 용도로 기밀정보를 사용해서 안된다. 판매자는 본 주문서하의 판매자 의무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자의 직원, 도급인 및 제조자이외의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엄격하게 기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또는 오용으로부터 정보의 기밀성을 지킬 의무를 부담한다. 판매자는 기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오용을 인지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본 조항은 기밀정보가 구매자에게 기밀로 유지되는 한 주문서가 해지, 만료되더라도 존속한다.

33. 기업윤리강령: 구매자는 모든 판매자가 법적 그리고 윤리적 사업관행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판매자는 http://www.dowcorning.co.kr/ko_KR/content/about/aboutsupplier/ 에서 확인 가능한 다우코닝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34. 양도: 본 주문서는 판매자 스스로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판매자에게 발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서면동의 없이 판매자의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구매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진행된 양도 또는 위임은 본 주문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설사 구매자가 양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본 주문서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위한 권리양도 또는 판매자와의 상계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양도행위로 인해 32 조상의 판매자 기밀준수 의무가 완화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본 주문서하의 권리 또는 의무를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제 3 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

35.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주문서 및 관련된 모든 거래의 해석, 번역 및 이행은 법원리의 충돌 없이 주문서 상단에 인쇄된 구매자의 주소가 귀속된 국가법에 의한다. 국제 물품거래에 관한 유엔 협약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각각의 주문서와 관련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또는 이와 상응하는 소송 혹은 절차는 구매자의 주소지가 속해있는 재판관할에서 단독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재판관할지에 대한 이의 청구를 하지 않기도 한다.

36. 부패금지: 본 주문서하에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판매자는 1977 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개정포함)및 의무이행에 적용될수 있는 유사법, 규정, 명령 또는 하위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반부패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다.또한 판매자는 (a)외국, 또는 국내 공무원;(b)외국, 또는 국내 정당; (c) 외국 정당후보; 또는 (d) 공공 또는 일반민간분야, 사인 또는 기업, 외국 또는 국내를 불문하고 해당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끼칠목적으로 또는 부적절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업권을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또는 해당 유관부서로 하여금 부적절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보상할 목적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지불, 지불약속 또는 지불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제공, 증여, 제공약속 또는 제공승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판매자는 (a)본인 또는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현재 정부공무원이 아니며, (b) 만약 정부공무원이 (1)판매자가 되거나 판매자의 주주,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거나, (2) 판매자의 사업에 과반수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주문서를 이행하는 동안 구매자가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지불된 금액, 커미션, 보상금액, 환불 또는 기타 지불금을 판매자의 재판관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한다. 만약 구매자가 선의로, 판매자가 본 36 조상의 보증과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매자는 본 36 조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문이행과 관련된 판매자의 회계장부를 감사할 권리가 있다.

본 조건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도, 판매자는 본 36 조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변호사비용 포함), 경비, 판결금, 벌금 또는 기타 책임부담금으로부터 구매자, 그 모회사, 계열사 및 각각의 임원, 이사 및 직원을 면책, 방어하기로 한다.

본 36 조에 근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가 본 36 조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구매자가 관련 법조항을 위반하게 한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경우, 구매자는 벌금이나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즉각적으로 본 주문서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 좀더 명확하게, 구매자는 36 조에 근거한 해지 이후, 본 주문서에 따른 어떠한 금액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6 조에 따른 해지통보를 수령하는 즉시, 판매자는 주문서에 따른 모든 의무를 즉시 종료하고 구매자에게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효일: 2016 년 4 월 25 일